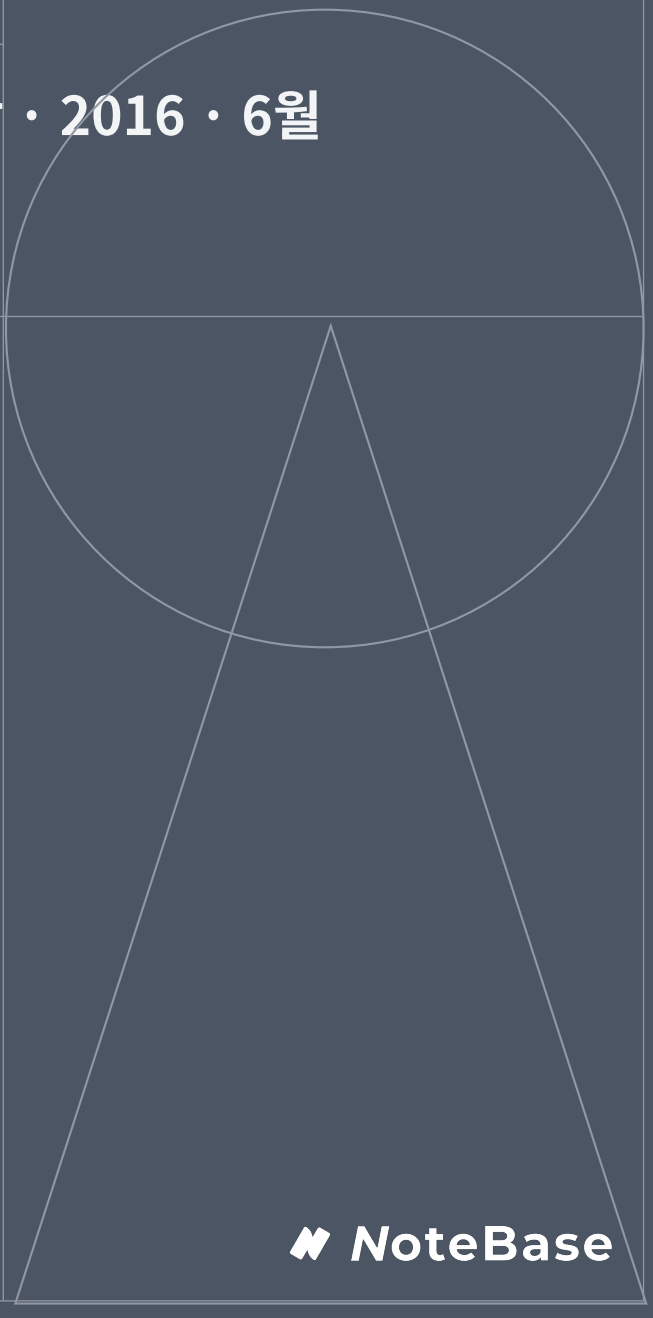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회계학 · 2016 · 6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회계학 · 2016 · 6월

공무원/서울시/9급 · 회계학 · 2016 · 6월

문 1. 12월 결산법인 (주)서울은 2015년 10월 1일에 건물과 기계를 ₩90,000에 일괄 구입하였다. 구입 당시 건물과 기계의 공정가치는 각각 ₩80,000과 ₩20,000이다. 기계의 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치는 ₩1,000이다. 2015년 기계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단, 기계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며, 기중 취득한 자산은 월할 계산한다.)

① ₩425

② ₩450

③ ₩472

④ ₩5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일괄 구입액을 **상대적 공정가치**로 배분하면 기계의 취득원가는 18,000원이다.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10년에 걸쳐 균등 배분하고 **3개월분만 반영**하면 2015년 감가상각비는 425원이다.

계산 과정

기계의 취득원가: 건물과 기계를 일괄 구입했으므로 총 구입액 90,000원을 두 자산의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한다. 공정가치 합계는 80,000 + 20,000 = 100,000원이다. 따라서 기계에 배분되는 취득원가는 $90{,}000 \cdot \frac{20{,}000}{100{,}000} = 18{,}000$원이다.

연간 감가상각비: 원가모형에서 정액법을 적용하므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한다. 기계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18,000 − 1,000 = 17,000원이며, 연간 감가상각비는 $\frac{17{,}000}{10} = 1{,}700$원이다. 이는 1년 전체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2015년 감가상각비: 10월 1일에 취득했고 12월 결산이므로 월할 계산에 반영할 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이다. 따라서 2015년 감가상각비는 $1{,}700 \cdot \frac{3}{12} = 425$원으로, ①의 425원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2. (주)서울의 2016년 초 자본은 ₩600,000이다. 2016년의 다음 자료에 따른 2016년 말의 자본은 얼마인가? (단,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 2016년 당기순이익은 ₩20,000이다.
· 액면금액 ₩500인 주식 40주를 주당 ₩1,000에 발행하였는데, 신주발행비로 ₩2,000을 지출하였다.
· 자기주식 3주를 주당 ₩3,000에 취득하였고, 그 이후 1주를 주당 ₩1,000에 처분하였다.
· 이익처분으로 현금배당 ₩3,000, 주식배당 ₩2,000을 실시하였으며, ₩2,000을 이익준비금(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

① ₩645,000
② ₩647,000
③ ₩649,000
④ ₩655,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주식배당과 이익준비금 적립은 **자본 내부의 대체**이므로 자본총액을 바꾸지 않는다. 당기순이익과 주식 발행 순유입액을 더하고, 자기주식 거래의 순유출액과 현금배당을 빼면 기말 자본은 **647,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자본총액은 기초 자본에 당기순이익과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증감을 반영하여 구한다. 자본 항목 사이의 대체는 총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문제의 조건에 따라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금액의 단위는 원이다.

당기순이익: 2016년 당기순이익 20,000원은 이익잉여금을 늘리므로 자본이 20,000원 증가한다.

주식 발행: 액면금액 500원인 주식 40주를 주당 1,000원에 발행하면 납입액은 40 × 1,000 = 40,000원이다. 이 중 자본금은 40 × 500 = 20,000원이고, 발행초과금은 20,000원이다. 신주발행비 2,000원은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므로 **자본의 순증가액**은 40,000 - 2,000 = 38,000원이다.

자기주식 거래: 자기주식은 자산이 아니라 **자본의 차감 항목**이다. 3주를 주당 3,000원에 취득하면 자본은 3 × 3,000 = 9,000원 감소한다. 이후 취득원가 3,000원인 1주를 1,000원에 처분하면 자기주식 차감액이 3,000원 줄고, 차액 2,000원은 자기주식처분손실로 자본에서 차감된다. 따라서 처분 시 자본은 받은 대금인 1,000원만 증가하며, 취득과 처분을 합친 자본의 순감소액은 9,000 - 1,000 = 8,000원이다. 이 처분손실은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당기순이익 20,000원을 다시 조정하지 않는다.

이익처분: 현금배당 3,000원은 이익잉여금을 줄여 자본총액을 3,000원 감소시킨다. 주식배당 2,000원은 이익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옮기는 것이고, 이익준비금 적립 2,000원은 이익잉여금 내부의 재분류이다. 두 거래는 모두 **자본총액의 증감이 없다**.

기말 자본: 자본의 순증가액은 20,000 + 38,000 - 8,000 - 3,000 = 47,000원이다. 기초 자본 600,000원에 이를 더하면 2016년 말 자본은 600,000 + 47,000 = 647,000원으로,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3. (주)서울은 12월 결산법인이다. (주)서울은 2016년 1월 1일 (주)한국의 유통보통주식 10,000주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주식을 주당 ₩1,000에 취득함으로써 (주)한국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2016년 9월 1일 (주)한국은 ₩200,000의 현금배당을 선언하고 지급하였다. 2016년 12월 31일 (주)한국은 2016년 당기순이익으로 ₩1,000,000을 보고하였다. 2016년 12월 31일 (주)서울이 보유하고 있는 (주)한국 주식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보고해야 할 관계기업투자주식과 지분법손익은 얼마인가? (단, (주)서울이 2016년 1월 1일에 (주)한국의 주식 취득 시 투자제거 차액은 없다고 가정한다.)

① 관계기업투자주식: ₩3,240,000, 지분법손익: ₩300,000

② 관계기업투자주식: ₩3,240,000, 지분법손익: ₩240,000

③ 관계기업투자주식: ₩3,300,000, 지분법손익: ₩300,000

④ 관계기업투자주식: ₩3,300,000, 지분법손익: ₩24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지분법에서는 관계기업의 순이익 중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분법손익**으로 인식하고, 받은 배당은 **투자주식 장부금액에서 차감**한다. 지분법이익은 300,000원이며, 기말 관계기업투자주식은 취득원가에 이익을 더하고 배당금을 뺀 3,24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적용 기준: (주)서울은 (주)한국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지분법을 적용한다. 투자주식을 처음에는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이후 관계기업의 순이익 중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익과 투자주식 증가로, 배당금 수령액은 투자주식 감소로 반영한다.

취득원가: 2016년 1월 1일 취득한 주식 수는 10,000주 × 30% = 3,000주이다. 따라서 최초 관계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은 3,000주 × 1,000원 = 3,000,000원이다.

지분법손익: 연초부터 주식을 보유했으므로 2016년 **연간 순이익 전체에 지분율 30%**를 적용한다. 투자제거차액이 없으므로 이에 따른 추가 손익 조정도 없다. 지분법이익은 1,000,000원 × 30% = 300,000원이며, 투자주식 장부금액도 같은 금액만큼 증가한다.

배당금: 9월 1일 받은 금액은 200,000원 × 30% = 60,000원이다. 지분법에서는 순이익에 대한 지분을 이미 이익으로 반영하므로, 배당금은 다시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투자금액의 회수**로 보아 투자주식 장부금액을 줄인다. 따라서 배당금 수령으로 지분법이익 300,000원이 감소하지 않는다.

기말 장부금액: 취득원가에 지분법이익을 더하고 받은 배당금을 뺀다. 3,000,000원 + 300,000원 − 60,000원 = 3,240,000원이다. 따라서 관계기업투자주식 3,240,000원과 지분법손익 300,000원의 조합은 ①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4. 12월 결산법인 ㈜서울은 2014년 기말재고자산을 ₩3,000 과대계상하였고, 2015년 기말재고자산을 ₩2,000 과소계상하였음을 2015년 말 장부마감 전에 발견하였다. 이러한 오류들을 수정하기 전의 2015년 당기순이익이 ₩10,000이라면, 오류수정 후 2015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단,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5,000

② ₩9,000

③ ₩11,000

④ ₩15,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2014년 말 재고의 과대계상은 2015년 기초재고에 이어지고, 2015년 말 재고의 과소계상과 함께 **2015년 매출원가를 총 5,000원 과대계상**하게 한다. 이를 수정하면 당기순이익은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증가한다.

계산 과정

매출원가 = 기초재고자산 + 당기매입액 − 기말재고자산이다. 판매 가능한 재고의 원가에서 기말에 남은 재고의 원가를 빼면 판매된 재고의 원가가 된다. 따라서 기초재고가 크거나 기말재고가 작게 기록되면 매출원가가 커지고, 당기순이익은 작아진다.

2015년 기초재고 오류: 2014년 기말재고자산은 **2015년 기초재고자산으로 이월**된다. 전기 말의 3,000원 과대계상으로 2015년 기초재고도 3,000원 과대계상되어 있다. 그 결과 2015년 매출원가는 3,000원 과대계상되고 당기순이익은 3,000원 과소계상된다. 이를 수정하면 2015년 당기순이익이 3,000원 증가한다.

2015년 기말재고 오류: 기말재고자산이 2,000원 과소계상되면 매출원가 계산에서 **차감할 금액이 2,000원 적어져** 매출원가가 그만큼 과대계상된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2,000원 과소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면 당기순이익이 2,000원 증가한다.

오류수정 후 당기순이익: 2015년 말 장부마감 전에 두 오류를 수정하고 법인세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매출원가 감소액 3,000 + 2,000 = 5,000원만큼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10,000 + 3,000 + 2,000 = 15,000원으로, ④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5.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재정운영순원가는 사업순원가에서 관리운영비 및 비배분비용은 더하고, 비배분수익을 빼서 표시한다.

③ 자산은 공공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계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고 작성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는 문항에 적용된 개정 전 규칙의 요건과 다르다.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자산으로 인식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제4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자산을 0원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한다.

② O: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업순원가에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더하고 비배분수익을 뺀다. 사업순원가는 총원가에서 사업수익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여기에 조직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사업에 배분하지 않은 비용·수익을 반영하여 재정운영순원가를 구한다. **비용은 가산하고 수익은 차감**하는 구조이다.

③ X: 이 문항에 적용된 제12조제1항의 개정 전 규정은 자산이 공공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계실체에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선지의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는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로 고쳐야 한다. 효익에 관한 요건뿐 아니라 금액의 신뢰성 있는 측정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 조항은 2021년 1월 7일 개정되었으므로, 여기서의 판단은 개정 전 문구를 기준으로 한다.

④ O: 제9조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내부거래를 상계**한다.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하나로 보고하므로, 소속 회계실체 사이의 거래를 그대로 합산하여 금액이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NoteBase

문 6. (주)서울의 직접재료원가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다면, 직접재료 가격차이와 직접재료수량차이로 옳은 것은?

직접재료 표준사용량 1,000단위
직접재료 실제사용량 1,200단위
직접재료 단위당 표준가격 ₩23
직접재료 단위당 실제가격 ₩20

① 직접재료가격차이: ₩3,000(유리한 차이), 직접재료수량차이: ₩4,000(불리한 차이)
② 직접재료가격차이: ₩3,000(불리한 차이), 직접재료수량차이: ₩4,000(유리한 차이)
③ 직접재료가격차이: ₩3,600(유리한 차이), 직접재료수량차이: ₩4,600(불리한 차이)
④ 직접재료가격차이: ₩3,600(불리한 차이), 직접재료수량차이: ₩4,600(유리한 차이)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실제가격이 표준가격보다 낮아 **가격차이는 3,600원 유리**하고, 실제사용량이 표준사용량보다 많아 **수량차이는 4,600원 불리**하다. 가격차이는 실제사용량을, 수량차이는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계산 과정

직접재료가격차이: **실제사용량을 동일하게 두고** 실제가격과 표준가격의 차이를 계산한다. 가격차이 = (20원 − 23원) × 1,200단위 = −3,600원이다. 실제 사용한 1,200단위에 대해 단위당 3원씩 원가가 절감되었으므로 3,600원의 유리한 차이이다.

직접재료수량차이: 가격 변동의 영향을 제외하기 위해 사용량 차이를 **표준가격으로 평가**한다. 수량차이 = (1,200단위 − 1,000단위) × 23원 = 4,600원이다. 표준사용량보다 200단위를 더 사용하여 표준가격 기준으로 원가가 증가했으므로 4,600원의 불리한 차이이다.

직접재료가격차이 3,600원(유리한 차이), 직접재료수량차이 4,600원(불리한 차이)이므로 ③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7. 다음 중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기준 가운데 현행원가(current cos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자산은 동일하거나 동등한 자산을 미래시점에서 취득할 경우에 그 대가로 지불해야 할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채는 미래시점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자산은 동일하거나 동등한 자산을 현재시점에서 취득할 경우에 그 대가로 지불해야 할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채는 현재시점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③ 자산은 정상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채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④ 자산은 정상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채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현행원가는 자산의 **현재 취득금액**과 부채를 **현재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할인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미래의 취득금액이나 자산을 처분하여 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공통 해설

현행원가는 현재시점에서 같은 경제적 상태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측정기준이다. 이 문항에서는 자산을 지금 다시 취득한다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부채를 지금 이행한다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자산은 **동일하거나 동등한 자산을 현재 취득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미래시점의 예상 취득금액은 기준이 아니며, 자산을 정상적으로 처분하여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과도 구별된다. 취득을 위해 지급할 금액과 처분하여 수취할 금액은 측정의 방향이 다르다.

부채는 **현재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미래에 지급할 현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의무를 이행할 때 필요한 금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나중에 상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라는 설명만으로는 현행원가의 현재 이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NoteBase

문 8. (주)서울은 12월 결산법인이다. (주)서울은 2015년 4월 1일 (주)한국의 주식 20주를 주당 ₩5,000에 취득하였다. 2015년 12월 31일 (주)한국 주식 1주당 공정가액은 ₩6,000이다. 2016년 1월 1일 (주)서울은 보유중인 (주)한국 주식의 절반인 10주를 1주당 ₩7,000에 처분하였다. 2016년 (주)한국 주식의 처분에 따른 금융자산처분손익에 대하여 (주)서울이 (주)한국 주식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각각의 처분이익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0,000, 매도가능금융자산: ₩10,000

②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0,000, 매도가능금융자산: ₩20,000

③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0,000, 매도가능금융자산: ₩10,000

④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0,000, 매도가능금융자산: ₩2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전기 평가이익을 이미 당기손익에 반영했으므로, 처분 시 추가로 발생한 이익 10,000원만 인식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처분한 주식에 해당하는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10,000원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므로 처분이익이 20,000원이다.

계산 과정

처분대상 금액: 취득한 20주 중 처분한 주식은 10주이다. 이 10주의 취득원가는 10주 × 5,000원 = 50,000원, 2015년 말 장부금액은 10주 × 6,000원 = 60,000원이다. 2016년 1월 1일 처분대금은 10주 × 7,000원 = 70,000원이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015년 말 전체 20주의 평가이익은 (6,000원 − 5,000원) × 20주 = 20,000원이며, 이를 2015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2016년 처분이익은 **처분대금과 전기 말 장부금액의 차액**인 70,000원 − 60,000원 = 10,000원이다. 전기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평가이익은 다시 포함하지 않는다.

매도가능금융자산: 2015년 말 평가이익 20,000원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자본에 누적한다. 처분한 10주에 해당하는 누계액은 (6,000원 − 5,000원) × 10주 = 10,000원이며, 처분 시 이 금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따라서 2016년 처분이익은 처분대금과 장부금액의 차액 10,000원에 재분류액 10,000원을 더한 20,000원이다. 계속 보유하는 나머지 10주에 해당하는 누계액은 이번 처분손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처분이익은 10,000원,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이익은 20,000원으로, ②의 금액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9. 2016년 초에 설립된 12월 결산법인 (주)서울의 2016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50,000이다. 2016년의 세무조정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은 높다. (주)서울의 2016년 법인세비용은 얼마인가? (단, 당기의 평균세율은 20%이며, 차기 이후의 법인세 관련 세율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접대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1,000
미수이자 익금불산입 ₩3,000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7,000

① ₩10,000
② ₩10,200
③ ₩11,000
④ ₩11,8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접대비 한도초과액 1,000원은 앞으로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영구적 차이**이므로 법인세비용을 200원 늘린다. 미수이자와 감가상각비의 일시적 차이는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에 반대 방향으로 반영되므로, 법인세비용은 (50,000 + 1,000) × 20% = 10,2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법인세비용은 당기 과세소득에 대한 당기법인세에 이연법인세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이연법인세부채의 증가는 비용을 늘리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증가는 비용을 줄인다. 당기와 차기 이후의 세율은 모두 20%이며, 당기 초 설립된 법인이므로 기초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없다.

당기법인세: 손금불산입은 회계상 비용을 세무상 비용에서 제외하므로 과세소득에 더하고, 익금불산입은 회계상 수익을 세무상 수익에서 제외하므로 과세소득에서 뺀다. 과세소득은 50,000 + 1,000 − 3,000 + 7,000 = 55,000원이며, 당기법인세는 55,000 × 20% = 11,000원이다.

접대비 한도초과액: 1,000원은 당기뿐 아니라 **미래에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소득에는 더하지만, 미래에 해소될 일시적 차이가 아니므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미수이자: 회계상 이자수익으로 인식한 3,000원은 당기에는 익금불산입되지만 미래에는 과세된다. 미래 과세소득을 늘리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이므로 이연법인세부채 3,000 × 20% = 600원을 인식한다. 이 부채의 증가는 당기 법인세비용을 600원 늘린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한 7,000원은 당기에 손금불산입되지만 미래에 손금으로 인정되어 과세소득을 줄이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이다. 이를 사용할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조건을 충족하므로 이연법인세자산 7,000 × 20% = 1,400원을 인식한다. 이 자산의 증가는 당기 법인세비용을 1,400원 줄인다.

법인세비용: 당기법인세에 이연법인세부채 증가액을 더하고 이연법인세자산 증가액을 뺀다. 따라서 11,000 + 600 − 1,400 = 10,200원이며,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0. (주)서울은 두 개의 보조부문 동력부(S1), 수선부(S2)와 두 개의 제조부문 절단부(P1), 조립부(P2)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 중 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관계와 부문별로 집계된 원가는 다음과 같다. (주)서울은 단계배분법에 의하여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하고 있다. 동력부(S1)의 원가부터 배분할 경우 절단부(P1)의 배분 후 원가는 얼마인가?

사용부문 / 제공부문	보조부문		제조부문		계
	동력부(S1)	수선부(S2)	절단부(P1)	조립부(P2)	
동력부(S1)	–	50%	20%	30%	100%
수선부(S2)	20%	–	40%	40%	100%
부문별 원가	₩100,000	₩50,000	₩200,000	₩250,000	₩600,000

① ₩265,000

② ₩270,000

③ ₩275,000

④ ₩28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단계배분법에서는 **먼저 배분을 마친 동력부에 수선부 원가를 다시 배분하지 않는다**. 절단부는 동력부에서 20,000원, 수선부에서 50,000원을 배분받으므로 기존 원가 200,000원에 이를 더한 배분 후 원가는 27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단계배분법은 정해진 순서대로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하되, **이미 배분을 마친 보조부문은 이후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다. 표의 행은 용역 제공부문, 열은 용역 사용부문이므로 각 제공부문의 원가를 해당 행의 사용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1. 동력부(S1) 원가 배분: 동력부 원가 100,000원을 수선부(S2) 50%, 절단부(P1) 20%, 조립부(P2) 30%의 비율로 배분한다. 수선부 배분액은 100,000 × 50% = 50,000원, 절단부 배분액은 100,000 × 20% = 20,000원, 조립부 배분액은 100,000 × 30% = 30,000원이다.

2. 수선부(S2) 원가 배분: 수선부가 배분할 원가는 **자체 원가에 동력부에서 배분받은 금액을 더한** 50,000 + 50,000 = 100,000원이다. 수선부 용역 중 동력부가 사용하는 20%는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절단부와 조립부의 사용 비율 40% : 40%를 기준으로 나눈다. 따라서 절단부 배분액은 $100,000 \times \frac{40}{40+40} = 50,000$ 원이며, 조립부에도 50,000원을 배분한다.

3. 절단부(P1)의 배분 후 원가: 기존 원가 200,000원에 동력부 배분액 20,000원과 수선부 배분액 50,000원을 합산한다. 200,000 + 20,000 + 50,000 = 270,000원으로,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1. 다음에서 제시되는 A~C의 세 가지 거래는 독립적인 거래이다. 빈칸에 들어가야 하는 (가)－(나)－(다)의 금액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거래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말부채	기말자본	총수익	총비용	현금 배당금
A	㈎	₩ 9,000	₩24,000	₩27,000	₩27,000	₩30,000	₩6,000
B	₩30,000	₩18,000	₩20,000	㈏	₩20,000	₩14,000	₩6,000
C	₩30,000	₩22,500	₩13,500	₩10,500	㈐	₩12,000	₩6,000

① (가): ₩27,000, (나): ₩12,000, (다): ₩21,000

② (가): ₩27,000, (나): ₩24,000, (다): ₩16,500

③ (가): ₩45,000, (나): ₩12,000, (다): ₩21,000

④ (가): ₩45,000, (나): ₩24,000, (다): ₩28,5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자본은 당기순이익만큼 증가하고 **현금 배당금만큼 감소**한다. 이 관계와 자산·부채·자본의 관계를 각 거래에 따로 적용하면 (가)는 45,000원, (나)는 12,000원, (다)는 21,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A~C는 서로 독립적이므로 각 행의 자료만 사용한다.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며, 당기순이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이다. 기말자본은 기초자본에 당기순이익을 더하고 현금 배당금을 차감하여 구한다. 현금배당금은 **비용이 아니라 자본의 감소**이므로 당기순이익 계산에서는 차감하지 않는다.

A의 (가) — 기초자산: 총수익 27,000원보다 총비용 30,000원이 많으므로 당기순손실은 3,000원이다. 손실과 배당으로 자본이 각각 3,000원과 6,000원 감소한 뒤 기말자본이 27,000원이 되었으므로, **감소분을 되돌려 더한** 기초자본은 27,000 + 3,000 + 6,000 = 36,000원이다. 기초부채가 9,000원이므로 기초자산 (가)는 9,000 + 36,000 = 45,000원이다.

B의 (나) — 기말자본: 기초자본은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뺀 30,000 − 18,000 = 12,000원이다. 당기순이익은 20,000 − 14,000 = 6,000원이며, 현금 배당금도 6,000원이다. 따라서 **이익에 따른 증가와 배당에 따른 감소가 상쇄**되어 기말자본 (나)는 12,000 + 6,000 − 6,000 = 12,000원이다. 기말부채 20,000원은 기말자본에서 다시 차감하지 않는다.

C의 (다) — 총수익: 기초자본은 30,000 − 22,500 = 7,500원이며, 기말자본은 10,500원이다. 현금 배당금 6,000원을 지급하고도 자본이 3,000원 증가했으므로, 당기순이익은 **자본 증가액에 배당금을 더한** 3,000 + 6,000 = 9,000원이다. 당기순이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이므로 총수익 (다)는 9,000 + 12,000 = 21,000원이다.

(가) 45,000원, (나) 12,000원, (다) 21,000원으로, ③의 금액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2. ㈜서울의 2015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임차료비용과 이자비용은 각각 ₩300,000과 ₩450,000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과 관련된 재무상태표 계정의 기말잔액은 다음과 같다. ㈜서울이 2015년도에 현금으로 지출한 임차료와 이자비용 금액으로 옳은 것은?

	2014년 말	2015년 말
선급임차료	₩0	₩75,000
미지급이자	₩200,000	₩0

① 임차료비용: ₩225,000, 이자비용: ₩250,000

② 임차료비용: ₩225,000, 이자비용: ₩650,000

③ 임차료비용: ₩375,000, 이자비용: ₩250,000

④ 임차료비용: ₩375,000, 이자비용: ₩650,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선급임차료 증가액은 **미리 지급했지만 당기 비용이 아닌 금액**이므로 임차료비용에 더하고, 미지급이자 감소액은 **전기에 발생한 이자를 당기에 지급한 금액**이므로 이자비용에 더한다. 따라서 현금지출액은 임차료 375,000원, 이자 650,000원이다.

계산 과정

포괄손익계산서의 비용은 현금 지급 시점이 아니라 해당 기간에 발생한 금액을 나타낸다. 따라서 현금지출액을 구하려면 선급비용과 미지급비용의 변동을 조정한다. 표의 2014년 말 잔액은 2015년 초 잔액이다.

임차료 현금지출액: 선급임차료는 현금을 미리 지급했으나 아직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은 자산이다. 기초 0원에서 기말 75,000원으로 증가했으므로, 2015년에는 비용으로 인식한 300,000원 외에 **미래 기간의 임차료 75,000원도 미리 지급**했다. 현금지출액은 임차료비용에 선급임차료 증가액을 더한 300,000 + 75,000 = 375,000원이다.

이자 현금지출액: 미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인식했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부채이다. 기초 200,000원에서 기말 0원으로 감소했으므로, 당기 발생 이자 450,000원에 더해 **전기에서 넘어온 미지급이자 200,000원도 지급**했다. 현금지출액은 이자비용에 미지급이자 감소액을 더한 450,000 + 200,000 = 650,000원이다.

임차료와 이자의 현금지출액은 각각 375,000원과 650,000원으로, ④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3. (주)서울의 2015년 12월 31일 현재 자본계정은 아래와 같다. (주)서울은 2012년 1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당기까지 배당은 없었다. 2016년 2월 3일 개최예정인 주주총회에서 ₩240,000의 배당을 선언할 예정이다. 우선주의 배당률이 5%라고 가정할 때, 우선주의 유형에 따른 배당금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보통주자본금 (액면 @₩100, 주식 수 8,000주) ₩800,000
· 우선주자본금 (액면 @₩100, 주식 수 4,000주) ₩400,000
· 이익잉여금 ₩1,000,000

① 누적적이고 비참가적 우선주의 경우, 보통주 배당금은 ₩160,000이고 우선주 배당금은 ₩80,000이다.

② 비누적적이고 완전참가적 우선주의 경우, 보통주 배당금은 ₩160,000이고 우선주 배당금은 ₩80,000이다.

③ 비누적적이고 비참가적 우선주의 경우, 보통주 배당금은 ₩216,000이고 우선주 배당금은 ₩24,000이다.

④ 비누적적이고 부분참가적(배당률 11%까지) 우선주의 경우, 보통주 배당금은 ₩196,000이고 우선주 배당금은 ₩44,000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비누적·비참가적 우선주는 **과거 미배당액의 누적이나 추가 배당 없이 당기 약정배당만** 받는다. 우선주 배당금은 400,000원 × 5% = 20,000원이고, 보통주는 나머지 220,000원을 받으므로 ③의 금액은 잘못되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배분할 총배당금은 240,000원이며, 우선주의 연간 약정배당금은 우선주자본금 400,000원 × 5% = 20,000원이다. 누적 여부는 과거 미배당액을 소급하여 받는지를, 참가 여부는 약정배당 외에 잔여배당금도 추가로 받는지를 뜻한다.

① O: 누적적 우선주이므로 배당이 없었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 연도의 약정배당금**을 받는다. 우선주 배당금은 20,000원 × 4년 = 80,000원이다. 비참가적이므로 잔여배당에는 참가하지 않으며, 보통주 배당금은 240,000원 − 80,000원 = 160,000원이다.

② O: 비누적적이므로 우선주에는 당기 약정배당금 20,000원만 먼저 배분한다. 보통주에도 같은 배당률 5%를 적용하여 800,000원 × 5% = 40,000원을 배분한다. 완전참가적이면 이렇게 **양쪽에 같은 배당률을 적용한 뒤 남은 금액을 자본금 비율로** 나눈다. 잔여배당금은 240,000원 − 20,000원 − 40,000원 = 180,000원이다. 우선주의 추가 배당금은 $180,000 \times \frac{400,000}{1,200,000} = 60,000$원이며, 보통주의 추가 배당금은 120,000원이다. 따라서 우선주는 20,000원 + 60,000원 = 80,000원, 보통주는 40,000원 + 120,000원 = 160,000원을 받는다.

③ X: 비누적적이므로 과거 미배당액을 소급하지 않고, 비참가적이므로 잔여배당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선주는 당기 약정배당금 20,000원만 받고, 보통주는 240,000원 − 20,000원 = 220,000원을 받는다. 선지의 금액은 **보통주 220,000원, 우선주 2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비누적적이므로 과거 미배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분참가적 우선주의 '배당률 11%까지'는 약정배당과 추가 배당을 합한 **총배당률의 상한이 11%**라는 뜻이다. 우선주 배당금의 한도는 400,000원 × 11% = 44,000원이다. 한도 없이 완전참가하면 ②의 계산처럼 80,000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한도 44,000원이 적용된다. 이는 약정배당금 20,000원에 추가 배당금 24,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보통주 배당금은 240,000원 − 44,000원 = 196,000원이다.

NoteBase

문 14. 다음은 (주)서울의 2015년도 연구 및 개발활동 지출내역이다. (주)서울의 2015년 말 재무제표에서 당기비용으로 인식될 금액은 얼마인가? (단, 개발단계에 포함되는 활동은 식별가능성과 통제가능성 및 미래경제적 효익의 제공가능성이 확인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을 얻고자 탐구하는 활동 ₩500,000
·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제작하는 활동 ₩550,000
·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 공장을 설계하는 활동 ₩600,000
· 연구결과나 기타지식을 이용하여 신기술 개발가능성을 연구하는 활동 ₩450,000

① ₩950,000
② ₩1,050,000
③ ₩1,150,000
④ ₩1,10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새로운 지식의 탐구와 신기술 개발가능성의 연구는 **연구단계 지출**이므로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시제품·모형 제작과 시험 공장 설계는 개발단계에 해당하여 문제의 가정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하므로,
당기비용은 500,000 + 450,000 = 95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연구단계 지출은 아직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자산이 존재함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개발단계 지출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자산으로 인식한다. 이 문제에서는 개발단계 활동의 식별가능성·통제가능성·미래경제적 효익의 제공가능성이 확인된다는 가정에 따라 연구단계 지출만 합산하여 당기비용을 구한다.

새로운 과학적·기술적 지식의 탐구 500,000원: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활동이므로 연구단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액을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 제작 550,000원: 지식을 구체적인 제품이나 모형으로 구현하는 **개발단계 활동**이다. 문제의 가정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므로 당기비용 합계에서 제외한다.

시험 공장 설계 600,000원: 상업적 생산에 적합한 경제적 규모가 아니더라도, 생산 공정 등을 시험하기 위한 공장의 설계는 개발단계 활동이다. **상업적 생산 규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구단계가 되지는 않는다.** 문제의 가정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므로 당기비용 합계에서 제외한다.

연구결과나 기타지식을 이용한 신기술 개발가능성 연구 450,000원: 기존 연구결과를 이용하더라도 아직 **개발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단계**이므로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연구결과를 구체적인 생산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개발활동과 구별해야 한다.

당기비용 합계: 연구단계 지출인 500,000원과 450,000원을 합산한다. 500,000 + 450,000 = 950,000원이므로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5. (주)서울의 2016년의 직접재료 매입액은 ₩225,000이며, 가공원가는 ₩168,000이 발생하였다. 직접노무원가는 제조간접원가의 60%이며, (주)서울의 2016년에 발생한 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서울의 2016년의 기본(기초) 원가는 얼마인가?

	기초재고	기말재고
직 접 재 료	₩45,000	₩30,000
재 공 품	₩20,000	₩28,000
제 품	₩35,000	₩60,000

① ₩273,000

② ₩303,000

③ ₩315,000

④ ₩340,8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기본(기초)원가는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의 합계**이다. 재고 변동을 반영한 직접재료원가 240,000원과 가공원가에서 구한 직접노무원가 63,000원을 합하면 303,000원이다.

계산 과정

기본(기초)원가는 제품 제조에 직접 투입되는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를 합한 금액이다. 가공원가는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의 합계이므로, 주어진 가공원가 전액을 기본원가에 더하지 않고 직접노무원가만 구해야 한다.

직접재료원가: 표의 직접재료 행에서 기초재고는 45,000원, 기말재고는 30,000원이다. 기초재고에 당기 매입액을 더하면 사용 가능한 재료의 금액이 되고, 여기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기말재고를 빼면 **당기에 실제 투입한 직접재료원가**가 된다.
직접재료원가 = 45,000 + 225,000 − 30,000 = 240,000원

직접노무원가: 직접노무원가가 제조간접원가의 60%이므로 두 원가의 비율은 60 : 100이다. 가공원가 168,000원은 두 원가의 합계이므로, 직접노무원가의 비중은 **가공원가 전체 160 중 60**이다.
직접노무원가 = 168,000 × (60)/(160) = 63,000원

기본원가: 240,000 + 63,000 = 303,000원으로,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기본원가는 당기에 투입한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의 합계이므로, 재공품과 제품의 기초·기말재고는 이 계산에서 조정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6. ㈜서울은 단일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2,000이며,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1,000이고,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는 ₩250이다.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는 ₩1,000,000이며, 고정판매관리비는 ₩500,000이 발생하였다. 목표이익 ₩3,000,000을 달성하기 위한 제품의 판매량은 몇 단위인가?

① 3,000단위

② 4,000단위

③ 4,500단위

④ 6,000단위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제품 1단위를 팔 때 변동제조원가와 변동판매관리비를 빼고 남는 **단위당 공헌이익은 750원**이다. 연간 고정원가 1,500,000원을 회수하고 목표이익 3,000,000원을 남기려면 총공헌이익 4,500,000원이 필요하므로 6,000단위를 판매해야 한다.

계산 과정

1. 단위당 공헌이익: 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뺀 금액으로, 고정원가를 회수하고 이익을 얻는 데 쓰인다. 단위당 변동원가에는 **변동제조원가와 변동판매관리비를 모두 포함**하므로 1,000 + 250 = 1,250원이다. 따라서 단위당 공헌이익은 2,000 − 1,250 = 750원이다.

2. 연간 고정원가: 고정제조간접원가와 고정판매관리비를 합산한다. 연간 고정원가는 1,000,000 + 500,000 = 1,500,000원이다.

3. 필요한 총공헌이익: 총공헌이익에서 고정원가를 차감한 금액이 이익이다. 따라서 목표이익을 달성하려면 **고정원가와 목표이익의 합계**만큼 총공헌이익을 확보해야 한다. 필요한 총공헌이익은 1,500,000 + 3,000,000 = 4,500,000원이다.

4. 목표 판매량: 판매량을 Q라고 하면 총공헌이익은 단위당 공헌이익 750원에 Q를 곱한 금액이다. 따라서 $Q = \frac{4,500,000}{750} = 6,000$단위이다. 목표 판매량 6,000단위는 ④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7. (주)서울은 (주)한국은행에 당좌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말 결산 시 은행과의 잔액 일치 여부를 대조하고 있다. 12월 말 현재 은행측에 당좌예금 잔액을 확인해 본 결과 예금잔액증명서상 수정 전 잔액은 ₩40,000으로 밝혀졌다. (주)서울이 다음과 같은 차이를 확인하였다면, (주)서울의 수정 전 당좌예금잔액은 얼마인가?

추가 발견 사항	금액
(1) 거래처에서 은행에 직접 입금한 금액(은행이 ㈜서울에 통지하지 않았음)	₩400
(2) 예금잔액에 대한 이자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은행은 ㈜서울에 통지하지 않았음	₩100
(3) ㈜서울이 거래처로부터 수령하여 은행에 입금한 수표 중 부도처리된 것(㈜서울은 부도사실을 모르고 있었음)	₩500
(4) 당좌거래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였으나 은행은 ㈜서울에 통지하지 않았음	₩100
(5) 은행이 기록하지 않은 예금	₩5,000

① ₩40,000

② ₩41,100

③ ₩43,500

④ ₩45,1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은행측 수정 후 잔액은 미기록 예금 5,000원을 더한 45,000원이다. 회사측 수정사항은 합계 **100원 감소**이므로, 이를 거꾸로 더한 **45,100원**이 회사의 수정 전 당좌예금잔액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은행계정조정에서는 회사와 은행 중 **해당 거래를 아직 반영하지 않은 쪽**의 잔액을 수정한다. 양쪽의 수정 후 잔액은 같아야 하므로, 은행측 수정 후 잔액을 구한 다음 회사측 수정사항을 역산한다.

(1) 거래처 직접 입금 400원: 은행은 입금을 반영했지만 회사는 통지를 받지 못해 기록하지 않았다. 회사측 당좌예금잔액에 400원을 더한다.

(2) 이자수익 100원: 은행이 예금에 가산한 이자를 회사가 아직 기록하지 않았다. 회사측 당좌예금잔액에 100원을 더한다.

(3) 부도수표 500원: 회사는 수표를 입금하면서 당좌예금 증가로 기록했으나, 부도로 인해 그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다. 회사가 부도사실을 모르고 있으므로 **이미 기록한 예금 증가를 취소**하여 회사측 잔액에서 500원을 뺀다.

(4) 당좌거래 수수료 100원: 은행은 수수료를 차감했지만 회사는 통지를 받지 못해 기록하지 않았다. 회사측 당좌예금잔액에서 100원을 뺀다.

(5) 은행이 기록하지 않은 예금 5,000원: 회사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은행에는 빠져 있는 입금액이므로 **은행측 잔액에 가산**한다. 은행측 수정 후 잔액은 40,000 + 5,000 = 45,000원이다.

회사측 수정 전 잔액 역산: 회사측 수정액의 합계는 400 + 100 − 500 − 100 = −100원이다. 즉, 회사측 수정 후 잔액 45,000원은 수정 전보다 100원 적다. 따라서 회사측 수정 전 잔액은 45,000 + 100 = 45,100원으로, ④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8. (주)서울건설은 2013년 초에 도급금액이 ₩1,000이며 공사기간이 3년인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계약시점부터 3년간의 공사예정원가를 ₩800으로 추정하였으며, 회사의 공사계약은 해당 계약 1건만 존재한다. 추가 자료는 아래와 같다.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2014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미청구공사 또는 초과청구공사 잔액은 얼마인가? (단, 진행률 산정기준은 투입원가 기준이다.)

	2013년	2014년	2015년
당기발생원가	₩200	₩400	₩200
기말현재 추정한 완성시점까지의 추가발생원가	₩600	₩200	–
공사대금 청구액	₩300	₩400	₩300
공사대금 수령액	₩200	₩400	₩400

① 미청구공사 ₩50

② 미청구공사 ₩100

③ 초과청구공사 ₩600

④ 초과청구공사 ₩7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2014년 말까지의 진행률은 75%이므로 누적 공사수익은 750원이다. 누적 청구액 700원보다 수익이 50원 많으므로 **미청구공사 50원**을 자산으로 표시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2014년 말 진행률: 투입원가 기준 진행률은 누적발생원가를 추정총공사원가로 나눈 비율이다. 표의 당기발생원가는 연도별 금액이므로 2014년 말 누적발생원가는 200 + 400 = 600원이다. 여기에 2014년 말 추정한 추가발생원가 200원을 더하면 추정총공사원가는 800원이다. 따라서 진행률은 $\frac{600}{800} = 75\%$이다.

2. 누적 공사수익: 도급금액에 진행률을 곱하면 공사 시작부터 2014년 말까지 인식할 수익이 된다. 누적 공사수익은 1,000 × 75% = 750원이다. 재무상태표의 기말 잔액을 구하므로 **2014년 한 해의 수익이 아니라 누적 수익**을 사용한다.

3. 누적 공사대금 청구액: 표의 청구액을 합하면 300 + 400 = 700원이다. 미청구공사와 초과청구공사는 인식한 수익과 **청구액**의 차이이므로, 수령액 200 + 400 = 600원을 차감하지 않는다. 청구했으나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은 별도의 매출채권에 해당한다.

4. 재무상태표 표시: 누적 공사수익이 누적 청구액보다 많으면 미청구공사라는 자산, 청구액이 더 많으면 초과청구공사라는 부채가 된다. 이 계약은 750 − 700 = 50원만큼 수익이 더 크므로 **미청구공사 50원**을 표시한다. 이는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9. 2015년의 총자산이익률은 2%이고 부채비율은 200%이다. 2016년의 매출액이익률은 4%이고 부채비율은 100%이다. 2016년 자기자본이익률이 2015년 자기자본이익률의 2배일 때 아래의 보기를 활용하여 2016년 총자산회전율을 구하면 얼마인가?

<보기>

$$\text{총자산이익률} = \frac{\text{당기순이익}}{\text{평균자산}} \qquad \text{부채비율} = \frac{\text{평균부채}}{\text{평균자본}}$$

$$\text{매출액이익률} = \frac{\text{당기순이익}}{\text{매출액}} \qquad \text{자기자본이익률} = \frac{\text{당기순이익}}{\text{평균자본}}$$

$$\text{총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평균자산}}$$

① 1.5

② 2

③ 2.5

④ 3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2016년 자기자본이익률 12%를 부채비율 100%에 맞춰 환산하면 총자산이익률은 6%이다. **총자산이익률을 매출액이익률로 나누면** 총자산회전율이므로, $\frac{6\%}{4\%} = 1.5$회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비율의 연결: 보기에서 총자산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은 분자가 모두 당기순이익이고, 분모만 평균자산과 평균자본으로 다르다. 평균자산은 평균부채와 평균자본의 합이므로, 평균자산은 평균자본의 **부채비율에 1을 더한 배수**이다. 따라서 총자산이익률에 이 배수를 곱하면 자기자본이익률이 된다.

2015년 자기자본이익률: 부채비율 200%는 평균부채가 평균자본의 2배라는 뜻이다. 평균자산은 평균자본의 3배이므로, 자기자본이익률은 2% × 3 = 6%이다.

2016년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은 전년의 2배이므로 6% × 2 = 12%이다. 부채비율 100%에서는 평균부채와 평균자본이 같아 **평균자산이 평균자본의 2배**이다. 따라서 총자산이익률은 자기자본이익률의 절반인 $\frac{12\%}{1+1} = 6\%$이다.

2016년 총자산회전율: 매출액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고, 총자산회전율은 매출액을 평균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둘을 곱하면 **매출액이 약분되어 총자산이익률**이 된다. 따라서 총자산회전율은 $\frac{6\%}{4\%} = 1.5$회이다. 이는 평균자산의 1.5배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올렸다는 뜻이며, ①의 1.5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20. (주)서울의 2015년 보통주의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4월 1일 실시한 보통주식의 유상증자는 주주우선 배정방식에 따른 것으로, 공정가치 미만으로 실시되었다. 유상증자 직전 주당 공정가치는 ₩80이며 유상증자 시 주당 실제 발행금액은 ₩40이다. 이때 2015년도 (주)서울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몇 주인가? (단, 모든 계산은 월 단위 계산을 기준으로 하며, 이론적 권리락 주당공정가치 및 조정비율 계산 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

구분	보통 주식 수
기초	9,000
4월 1일 유상증자	2,000
기말	11,000

① 10,125주

② 10,325주

③ 10,525주

④ 10,725주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격의 주주우선 유상증자에는 **무상증자 요소**가 있으므로, 증자 전 3개월의 주식수에 조정비율 1.1을 곱한다. 이를 증자 후 9개월의 11,000주와 기간별로 가중평균하면 **10,725주**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기간별 주식수: 표의 기초 보통주식수는 9,000주이고, 4월 1일 유상증자로 2,000주가 늘어나 기말에는 11,000주가 된다. 월 단위로 계산하므로 증자 전인 1~3월은 3개월, 증자 후인 4~12월은 9개월이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각 기간의 주식수에 그 기간이 1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곱하여 합산한다.

이론적 권리락 주당공정가치: 증자 직전 기존 주식의 공정가치 총액은 9,000 × 80 = 720,000원이고, 증자로 유입되는 금액은 2,000 × 40 = 80,000원이다. 두 금액을 합한 800,000원을 증자 후 주식수 11,000주로 나눈다. 이는 **기존 주식가치와 새 납입액을 증자 후 전체 주식에 배분한 주당 금액**이다. 문제의 지시대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를 버리면 $\frac{800{,}000}{11{,}000} = 72.727\ldots$에서 72.7원을 사용한다.

증자 전 주식수의 조정: 기존 주주에게 공정가치 미만으로 주식을 발행하면 납입액에 대응하는 부분 외에 무상증자 요소가 포함된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증자 전 주식수에 소급하여** 조정비율을 곱한다. 조정비율은 증자 직전 주당 공정가치를 이론적 권리락 주당공정가치로 나눈 값이다. $\frac{80}{72.7} = 1.1004\ldots$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를 버리면 1.1이다. 따라서 증자 전 9,000주는 계산상 9,000 × 1.1 = 9,900주로 조정한다.

기간별 가중평균: 1~3월은 무상증자 요소를 반영한 9,900주에 3개월의 비중을 적용하므로 $9{,}900 \cdot \frac{3}{12} = 2{,}475$주이다. 4~12월은 이미 증자 후 주식수이므로 조정비율을 다시 곱하지 않고, $11{,}000 \cdot \frac{9}{12} = 8{,}250$주로 계산한다.

연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2,475 + 8,250 = 10,725주이며, ④의 10,725주와 일치한다.

NoteBase